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7 - 327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8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0.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8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남	보물	18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2	전북	보물	45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3	전남	보물	49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4	충남	보물	184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5	충남	보물	219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6	충남	보물	399	홍성 고산사 대웅전
7	서울	보물	1738	서울 살곶이 다리
8	충남	보물	1746	논산 노강서원 강당

나. 사 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 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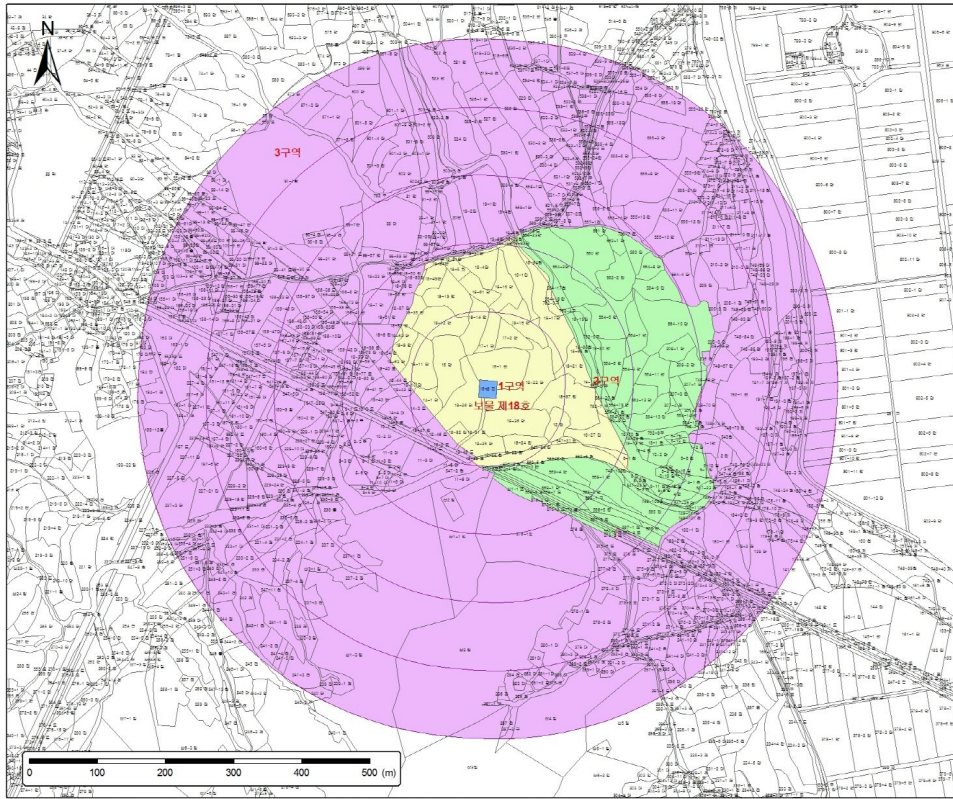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끝.

<붙임>

01.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충석탑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6-2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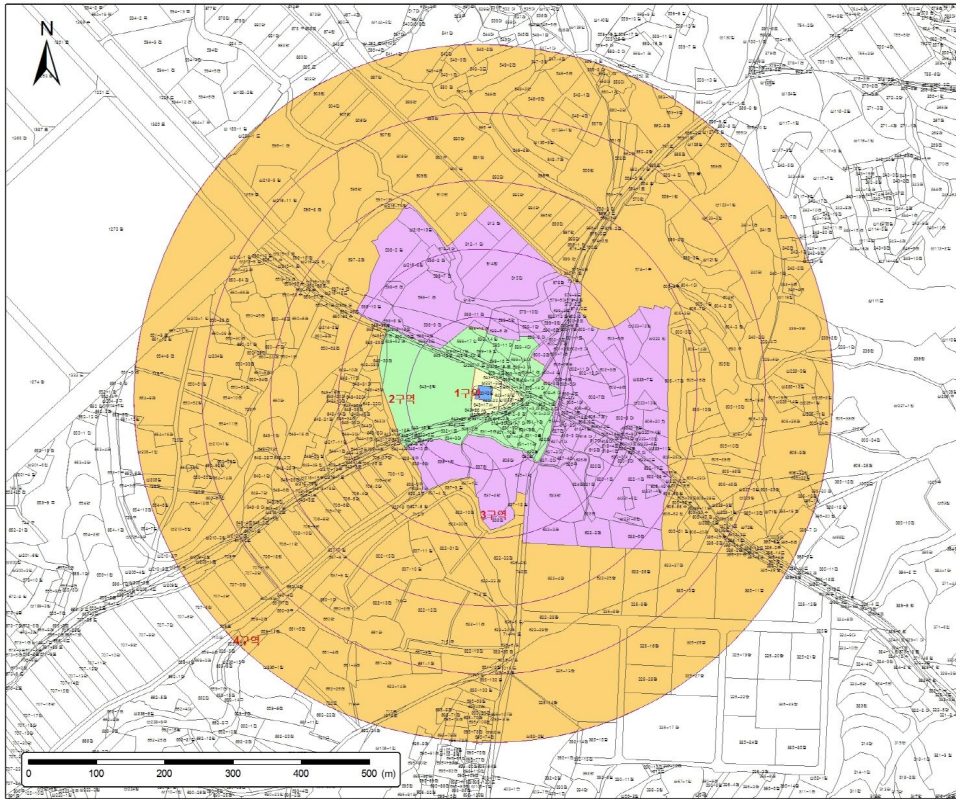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축적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2. 보물 제45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45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220-2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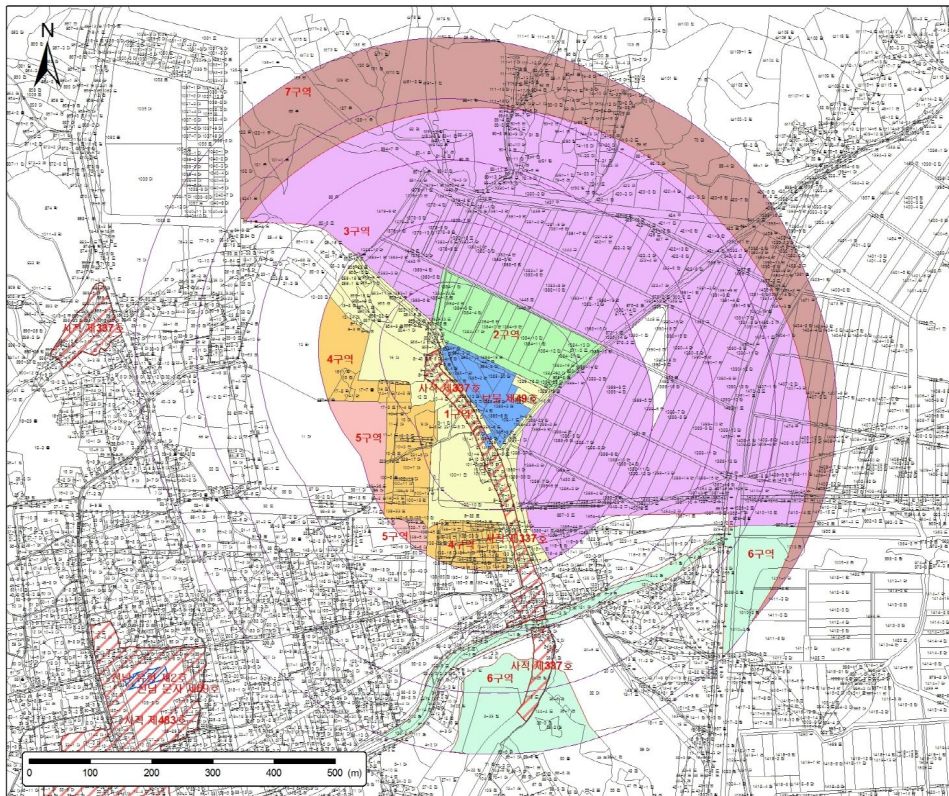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축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3.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사적 제347호 “나주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름		
7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229-9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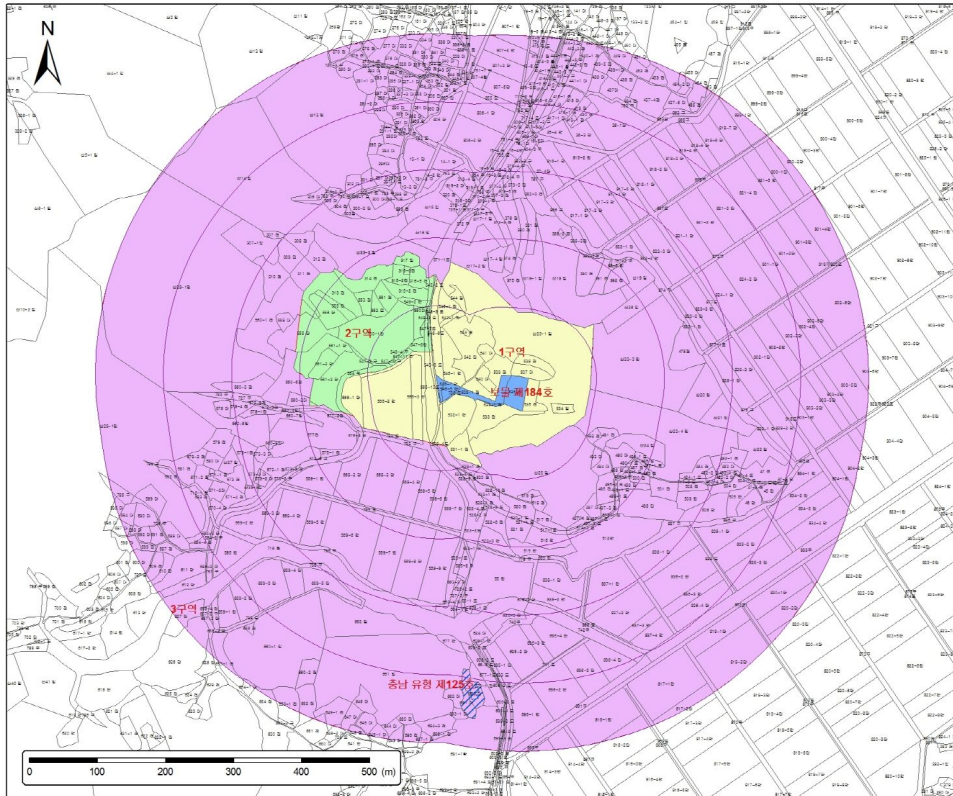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역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6구역
 - 7구역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4. 보물 제184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84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536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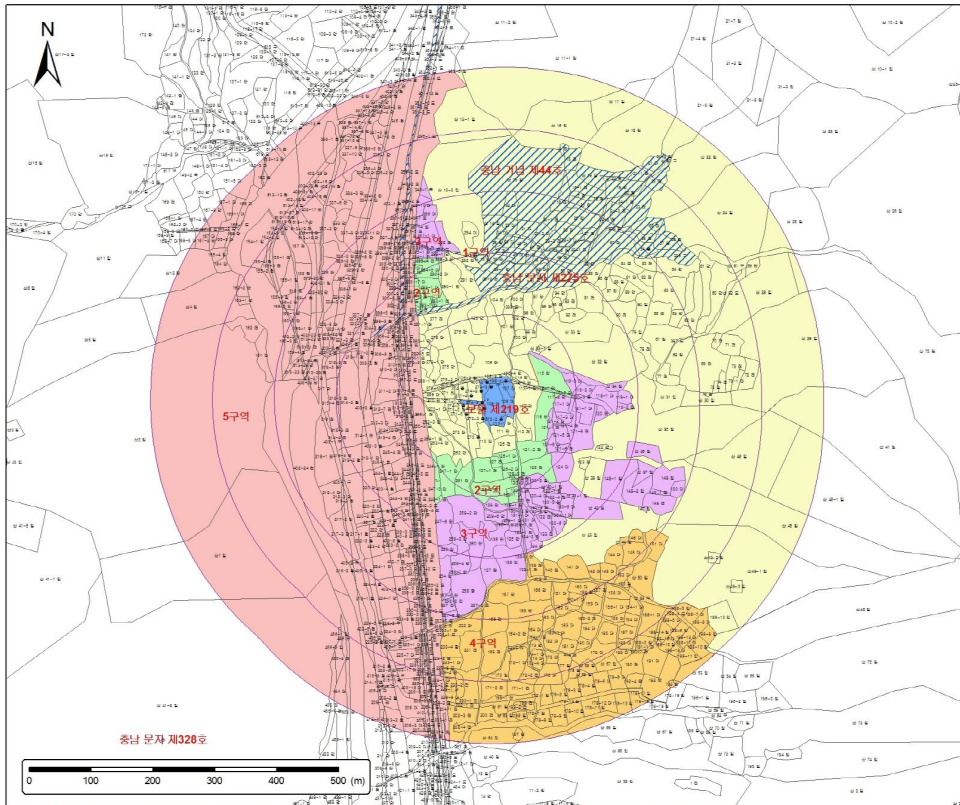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축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은 금합니다.

05.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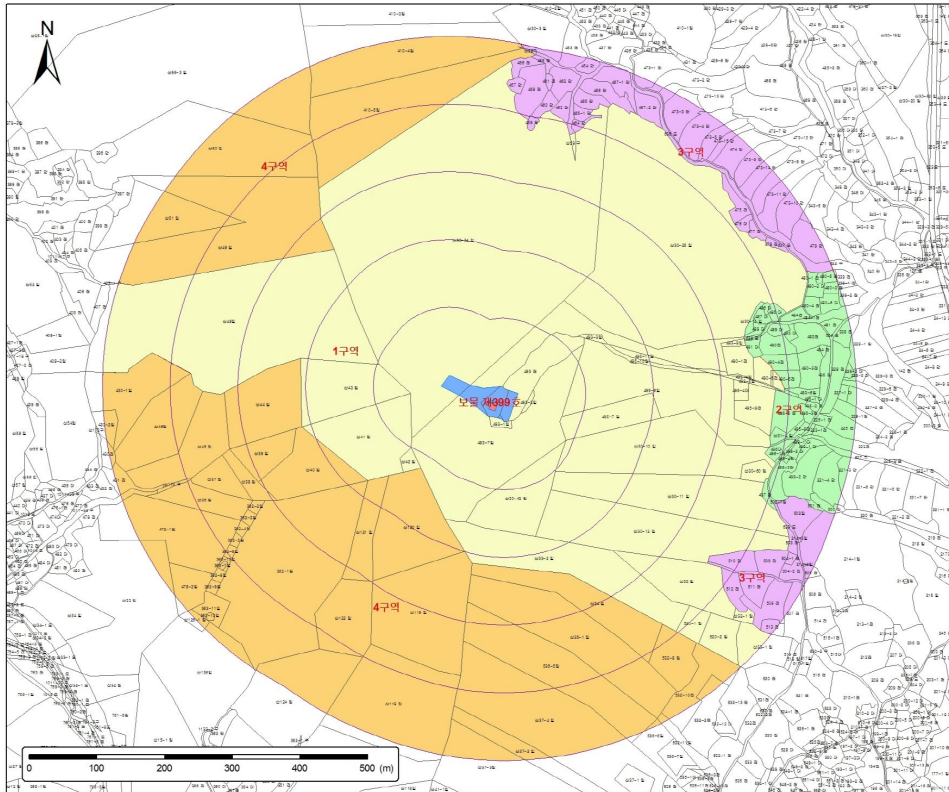
- 국가지정 지정구역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6. 보물 제399호 “흥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399호
홍성 고산사 대웅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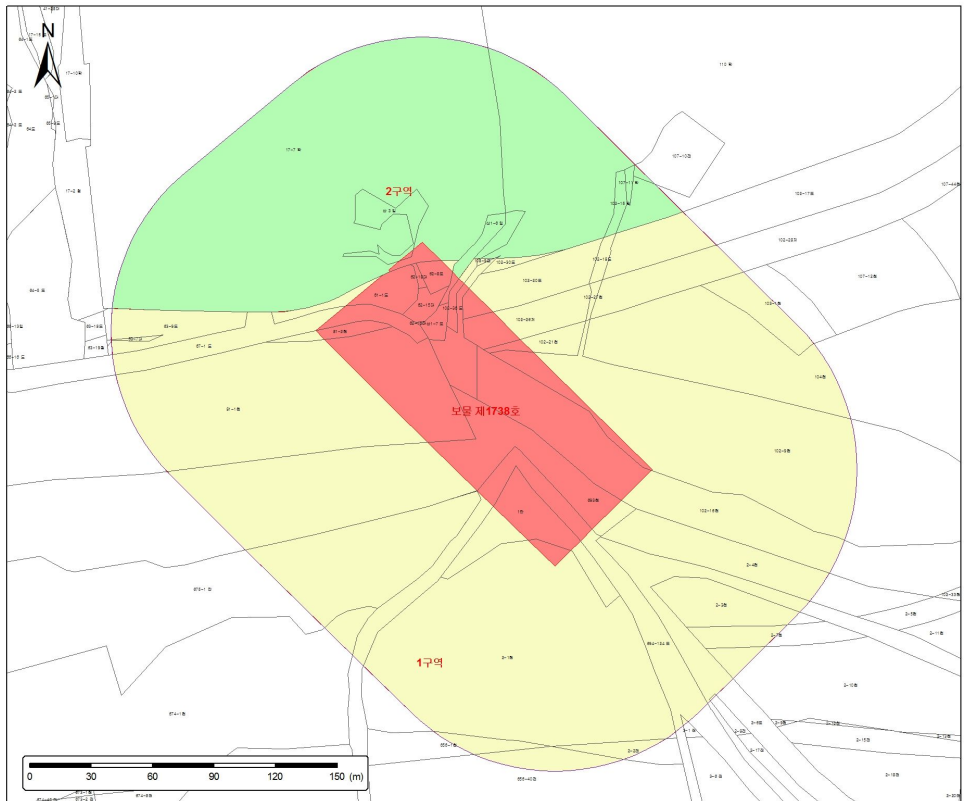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축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7. 보물 제1738호 “서울 살곶이 다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738호
서울 살곶이 다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58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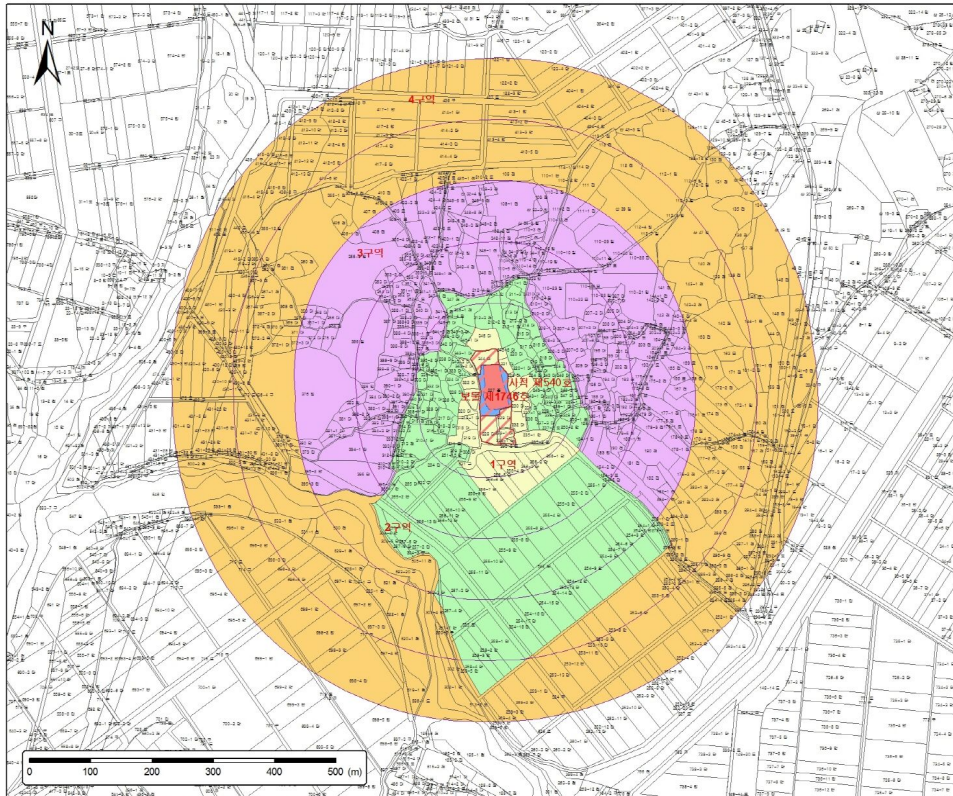
- 국가지정 문화재
- 연속지적
- 1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축척 **1:1,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08.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